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한국회계기준원

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5.12.1.(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회계감독총괄팀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	책임자	국 장	김은순	(02-3145-7750)
		담당자	팀 장	김경률	(02-3145-7752)
			팀 장	손희원	(02-3145-7970)
	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	책임자	실 장	김재호	(02-6050-0175)
		담당자	팀 장	이춘호	(02-6050-0174)

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(일탈회계) 관련 K-IFRS 질의회신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.

I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(일탈회계) 관련 질의에 대해 K-IFRS 질의회신 절차*를 거쳤으며, 그 결과 (회신 내용)를 안내해 드립니다.

*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K-IFRS 적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절차를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, 'K-IFRS 질의회신연석회의' 논의를 거쳐 질의자에게 회신
[참고] K-IFRS 질의회신연석회의 : 질의회신을 위해 금감원, 회계기준원, 한국공인 회계사회, 학계, 회계법인, 기업 등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

- 그간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금액에 대해 보험업 관련 법규에 따라 산출된 계약자지분조정 (부채)을 표시해 왔으며

- K-IFRS 제1117호 시행('23년)후에도 '22년 질의회신('22.12.28.)에 따라 유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K-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재무 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*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하에

* K-IFRS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상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(부채가 과소표시)됨에 따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

- K-IFRS 제1001호 문단 19(일탈회계)를 적용하여 종전과 같이 부채(계약자지분조정)로 처리해 왔습니다.

※ **[참고] '22년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('22.12.28.) 내용**

- (질의 내용)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-IFRS 제1117호 시행('23년)되는 경우에도 K-IFRS 1001호 문단 19을 적용하여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?
- (회신 내용) 원칙적으로 K-IFRS 제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나,
 - K-IFRS 제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, K-IFRS 제1001호를 적용하여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

- 그러나, K-IFRS 제1117호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탈회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
- 생명보험협회는 K-IFRS 제1001호 문단 19(일탈회계)에 따른 회계처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, 일탈회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.

II. 질의회신 내용

- ① 재무제표상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-IFRS 제1001호 문단 19에 따른 일탈회계(계약자지분조정)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, K-IFRS 제1117호 「보험계약」을 적용
- ② 일탈중단시 K-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,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 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에 대해 주석으로 충실하게 기재
- ③ 일탈중단시 K-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

① K-IFRS 제1001호 문단 19에 따르면 극히 드문 상황으로서 엄격한 전제조건*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나,

* ①K-IFRS의 요구사항 준수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영진이 판단하고 ②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과 다른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

-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-IFRS 제1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고*

* ❶ K-IFRS17 적용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다는 의견(일탈유지)과 ❷ K-IFRS17 회계처리가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실질적인 배당금 지급 의무를 보다 더 충실히 나타낸다는 의견(일탈중단)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

- K-IFRS 제1117호가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*에서 일탈 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

* 금융당국은 K-IFRS 17 안정화를 위해 계도기간('24년말까지)을 설정하여 지원

-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現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②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경우 국내 생명보험사는 K-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합니다.

- 즉, K-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측정한 유배당보험계약을 K-IFRS 제1001호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*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

*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하여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

- ❶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, ❷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 유배당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,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.

❶ K-IFRS 제1117호에서는 규제체계(regulatory frameworks) 효과에 관한 정보 공시 요구

❷ 고금리(약 7% 수준) 확정형 유배당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할 때,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음

③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일탈회계(계약자지분조정)에서 K-IFRS 제1117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K-IFRS 제1008호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.

- 즉,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K-IFRS 제1117호에 따라 작성*하며, 변경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 금액 등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.

* 예 : '25년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'24년 재무제표를 K-IFRS 제1117호에 따라 작성